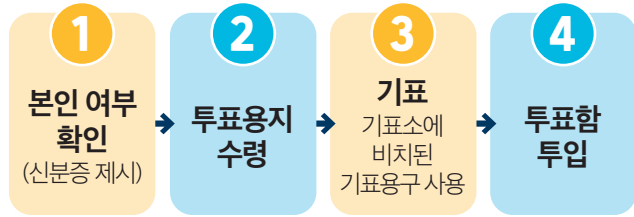


## 투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



> 투표시간 오전6시 ~ 오후6시

> 투표절차



- ※ 재·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추가 용지 수령
- ※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금지

## 준비물 및 유의사항



투표하러 가실 때에는

**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**

- ※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,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 증명서



투표용지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(㉠)를 사용하여 **하나의 후보자·정당란에만 기표해야 합니다**

### 무효로 처리되는 사례(예시)

- ✓ 기표(㉠)를 하지 않고 문자 등을 표시한 것
- ✓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것으로 표를 한 것
- ✓ 성명을 적거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
- ✓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표(㉠)를 한 것 등

##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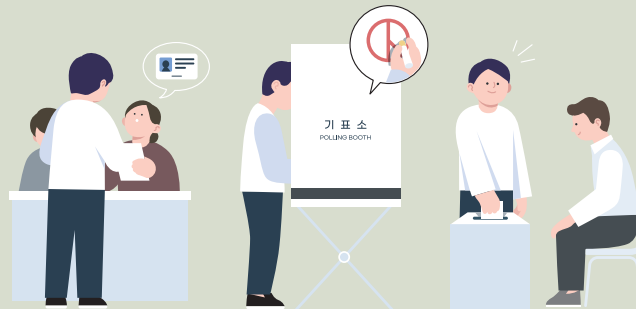
근로자는

사전투표기간(4. 5. ~ 4. 6.)과 선거일(4. 10.)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고용주는

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,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(4. 3.)부터 선거일 전 3일(4. 7.)까지 인터넷 홈페이지, 사보,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.

※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**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**가 부과됩니다.



희망찬 미래,  
공정하고 **안전한** 선거

#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



투표일

**4월 10일 (수)**

오전 6시 ~ 오후 6시

# 제22대 국회의원 선거



- > 선거일 2024. 4. 10.(수) 법정공휴일
- > 임 기 4년(2024. 5. 30. ~ 2028. 5. 29.)
- > 주요 선거일정

• 선거인명부작성	2024. 3. 19. ~ 3. 23.
• 선거인명부 열람·이의신청	2024. 3. 24. ~ 3. 26.
• 거소·선상투표신고기간	2024. 3. 19. ~ 3. 23.
• 사전투표	2024. 4. 5. ~ 4. 6.
• 투표 및 개표	2024. 4. 10.

## 선거법 위반 신고

### 선거관리위원회



www.nec.go.kr

### 경찰청



www.police.go.kr
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 
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



>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(2006. 4. 11. 이전출생)의 주민등록자에게 국회의원(지역구 및 비례대표) 선거권이 있습니다.

> 다만, 재외국민의 경우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(3. 19.)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한하여 인정합니다.

※ 주민등록이 3개월 미만인 재외국민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만 있음

## 선거인 명부에서 선거권을 확인하세요



> 열람 및 이의신청 3. 24. ~ 3. 26. 오전9시 ~ 오후6시

※ 인터넷 열람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  
구·시·군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(통상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) 또는 구·시·군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###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



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 
사전투표 하세요



> 투표일 4. 5.(금) ~ 4. 6.(토) 오전 6시 ~ 오후6시  
•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권자 누구나 신고없이 전국 읍·면·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.

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 
거소투표 신고하세요



> 신고기간 3. 19.(화) ~ 3. 23.(토)

> 신고방법

•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·시·군(읍·면·동 포함)의 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, 우편 발송, 구·시·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 
※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(nec.go.kr)에서도 출력 가능

> 거소투표 대상자

-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
-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
-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

### 선상투표

- ✓ 신고기간 3. 19.(화) ~ 3. 23.(토)
- ✓ 신고방법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, 팩스(승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), 구·시·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